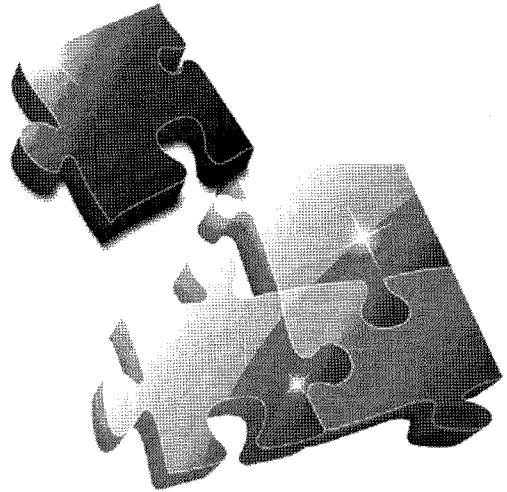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실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퇴직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 개요

- 신규 지원규모 : 약 130명 내외
- 지원대상 기업
  - 공고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퇴직기술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지원인력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지원인력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타(정부, 민간) 고용지원사업의 지원 (인건비)을 받지 않아야 함
  - ※ 지원기간 동안 타 지원사업에서 소급적용되는 경우 포함
- 지원인원 : 최대 3명(석·박사 2명 이내 + 퇴직기술인력 2명 이내)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 ※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3년까지 계속지원 가능



## ■ 지원금액

○ 3년간 지원금액(만원) : 3,600(석사), 4,500(박사), 4,800(퇴직기술인력(지방))

구분	석사			박사·퇴직기술인력(수도권)			퇴직기술인력(지방)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기준연봉	2,400			3,000			3,200		
정부 지원액	1,440 (월120)	1,200 (월100)	960 (월80)	1,800 (월150)	1,500 (월125)	1,200 (월100)	1,920 (월160)	1,560 (월130)	1,320 (월110)
기업 부담금	960 (월80)	1,200 (월100)	1,440 (월120)	1,200 (월100)	1,500 (월125)	1,800 (월150)	1,320 (월110)	1,560 (월130)	1,920 (월16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 기타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이공계 인력중개센터(www.RNDJOB.com)」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 신청기간 : 2010년 11월 10일(수) ~ 2010년 12월 10일(금)
- 제출서류 : www.rndjob.com 공지사항 참조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02) 3460-9080~3)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신청마감은 접수일 기준)
-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위조·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제외 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